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5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9.

발 의 자 : 채명지의원 외 1인

## 1. 제안이유

2006. 4. 28(법률 제7935호) 「지방자치법」의 일부개정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 · 제39조 ·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 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나. 달성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조)
- 다.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함.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8조 · 제39조 ·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
- 나. 예산조치 : -
- 다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간 총회의 일수)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회기)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·단축할 수 있다.

제4조(집회일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 집회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휴무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 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고,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.

제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개정전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## 관 계 법령 機關法規

### [지방자치법]

第38條 (定例會) ①地方議會는 매년 2회 定例會를 개최한다.

②定例會의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[전문개정 1999.8.31]

第39條 (臨時會) ①總選舉후 최초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지방의회 사

무처장 · 사무국장 · 사무과장이 地方議會議員 任期開始日부터 25  
日 이내에 召集한다. <改正 1994.3.16, 2006.4.28>

②地方議會議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  
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日 이내에 臨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.  
다만,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 
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06.4.28>

③臨時會의 召集은 市 · 道에 있어서는 集會日 7日전에, 市 · 郡 및  
自治區에 있어서는 集會日 5日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. 다만,  
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41條(開會 · 休會 · 閉會와 會議日數) ①地方議會의 開會 · 休會 · 閉  
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.

②삭제 <2005.1.27>

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  
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6.4.28>

## [지방자치법시행령]

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<개정 2000.7.1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00.7.1>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
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[본조신설 1999.12.31]

## 【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
-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

## 서명날인서

의원명	서명	날인
채명지	채명지	○
방종영	방종영	방종영